

양도소득세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재산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존 중에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 다를 뿐,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의 일종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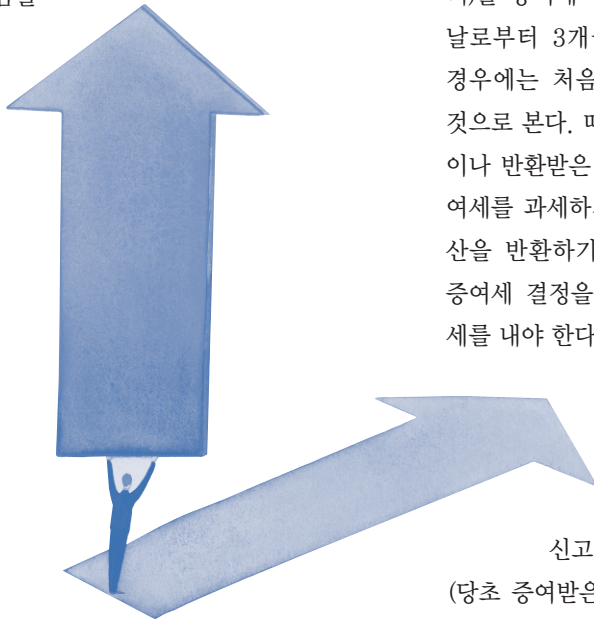
글 _ 정태화 세무사

1.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이내에 돌려받아라.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를 하는 친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거래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400만원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기에 이 주택씨는 자기가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이 주택씨는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이주택 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이 주택 씨 앞으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위와 같이 증여를 했다



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현금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반환시기	증여목적물	당초 증여시	반환시
신고기한 내(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비과세	비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비과세
증여일로부터 6월경과	금전 이외의 재산	과세	과세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증여가액의 4%에 상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3억 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어라.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3억 원을 공제해 준다. 즉,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 금슬씨가 부인 명의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 공제액(3억원) 이하이므로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 금슬 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 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3억 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 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 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사행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승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등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